

# 포로수용소의 설치 및 해제와 주민들의 고통: 제주·통영을 중심으로

전갑생\*·김민환\*\*

## I. 머리말

1. 문제제기: 한국전쟁 피해 통계에서 간과된 부분
2. 연구의 대상과 자료

## II. 포로수용소 건설 및 토지 사용(징발)의 문제와 주민들의 경험

1. 토지 소유와 유엔군에 의한 토지 사용 문제
2. 포로수용소 건설 과정과 주민들의 소개 경험

## III. 군사시설 '해제' 과정과 공동체의 대응

1. 군사시설 해제와 보상 문제
2. 공동체의 대응

## IV. 맺음말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제주도와 통영에서 토지 수용과 수용소 건설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소개, 소개민 수용소 생활, 복귀 및 복구 등 주민공동체 변화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검토했다. 첫째, 포로수용소가 어떤 과정을 통해 설립되고 건설되는지를 분석했다. 두 지역은 후방지역이며 음용수의 공급이 원활하고 섬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제주도는 이미 포화상태의 피난지이며 제1육군훈련소와 두 곳의 비행장을

\*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제1저자.

\*\* 한신대 정조교양대학 조교수. 교신저자.

보유하고 있었다. 통영군 용초와 봉암(지금의 추봉도)은 거제도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군사기지가 없는 전형적인 어촌이었다. 둘째, 포로와 피난민 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존 민간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포로수용소와 소개민 수용소가 동시에 설립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어난 토지 수용과 주민공동체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1952년 4월 이후 포로 재분류에 따라 여러 지역에 새로운 수용소가 건설되었다. 하지만 수용소 추가 건설은 기존 민간인들을 ‘강제 소개’해야 하는 문제를 낳았다. 토지수용 과정에서 발생한 이주와 이산은 주민공동체 변동을 가져 올 수밖에 없었다. 셋째, 소개민들의 복귀와 복구 및 배상 문제에서 토지수용과 공동체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분석했다. 휴전협정 체결 이후 포로교환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소개당한 주민들은 다시 복귀해 마을을 복구해야 했다. 주민들은 국방부에 강제 수용된 토지를 ‘해제’하고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소개민들의 복귀와 복구, 보상 문제는 토지수용과정에서 낳은 여러 난제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계기로 작용했다. 두 지역의 토지수용과정과 반환과정을 알 수 있는 토지대장, 주민들이 소장한 징발해제 관련 자료, 소개 주민들의 구술 등을 활용해 토지수용과 반환 과정에서 발생한 공동체 변화 등을 현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했다.

주제어 : 전쟁피해, 포로수용소, 토지강제수용, 소개민수용소, 주민들의 피해

## I. 머리말

### 1. 문제제기: 한국전쟁 피해 통계에서 간과된 부분

인적·물적 파괴가 수반되는 전술과 전략이 당연하게 운용된다는 점에서 전쟁은 아주 극단적으로 폭력적이다. 정규전이든 비정규전이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완전한 안전지대는 존재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전쟁이다. 전쟁의 과정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파괴’에 기반한 엄청난 물적 피해도 야기한다. 특히 한국전쟁은 이 피해상황이 너무나 대규모적이고 다층적이었다.

발발 70주년이 가까워진 만큼 국내의 한국전쟁 연구는 양적·질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초기에는 주로 한국전쟁의 기원, 발발 과정, 국제정치 맥락의

연구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맥락에서 벗어나 전투사에 대한 재해석, 전쟁과 점령, 전쟁과 일상, 전쟁과 학살 등의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누가 전쟁을 시작했는가’ 뿐만 아니라 ‘전쟁 중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답을 할 수 있게 되었다.<sup>1)</sup> 특히 전쟁 중 발생한 다양한 인적 피해의 양상에 대해서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구를 통한 조사와 민간 차원의 연구를 통해 상당 부분 밝혀진 바 있다.<sup>2)</sup> 또, 한국전쟁의 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비록 피해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피해상황을 각각의 근거에서 추론해서 발표한 거의 모든 국내외적 통계를 수집하여 하나의 자료집으로 출간한 수준까지에는 도달했다.<sup>3)</sup>

사실, 한국전쟁 피해상황의 규모와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한국전쟁의 인적·물적 피해와 관련해 현재까지 한국정부의 공식통계로 대표되고 있는 것은 『6·25사변 종합피해조사표』이다. 이 통계는 공보처 통계국이 1953년 7월에 조사해서 1954년 3월에 발간한 것으로,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단순한 차원에서 정리·제시하고 있다. ‘단순한 차원에서 정리·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적이며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피해의 양상과 규모를 추정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으며, 여기에 이 통계표 상의 수치가 정부 및 공공기관이 생산한 다른 통계의 수치와도 일치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이 통계표에 대한 ‘조사 신뢰도’에 대한 의문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sup>4)</sup> 현재로서는 다양한 출처의 각종 피해 통계들을 일별해 정리하고, 그 통계들이 만들어질 때 기본 자료가 되었던 원(原)통계와 비교해서 각종 피해 통계자료들이 만들어진 경로를 추적할 수밖에 없다. 이 과

- 
- 1) 한국전쟁 연구사와 관련해서는 김학재, 『관문점 체제의 기원』, 후마니타스, 2015의 pp.42-47을 참조할 것.
  - 2) ‘전쟁 중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하는 문제를 군인의 관점이 아닌 민간인의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으로는 김동춘, 『전쟁과 사회: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돌베개, 2000을 들 수 있다.
  - 3) 국사편찬위원회, 『실록 대한민국사 자료집, 한국경제 정책자료 8: 번역·통계편』, 국사편찬위원회, 2013. 이 자료집에는 물적 피해 뿐만 아니라 인적 피해와 관련된 통계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 4) 김민환·강성현, 「한국전쟁 피해 상황에 대한 종합 통계자료 해제」, 국사편찬위원회, 『실록 대한민국사 자료집, 한국경제 정책자료 8: 번역·통계편』, 국사편찬위원회, 2013, p.311.

정에서 다양한 분과학문의 연구자들의 협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어쩌면 한국전쟁 피해상황이 밝혀질 지도 모른다. 여기에 한국전쟁 피해상황 집계에 개입한 정치적 영향들, 가령, 범주 생산에 개입한 사회적 힘들이나 물적 피해 추산에 개입한 경제적 의도 등도 드러나면 한국전쟁에 관한 연구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sup>5)</sup>

기존의 한국전쟁 피해통계는 직접피해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어, 조금만 생각하면 당연히 전쟁피해의 범주에 포함될 것들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것들 중 대표적인 것이 군에 의한 민간토지의 ‘징발’ 문제이다. 또 이 징발 때문에 원래 살고 있던 곳에서 소개(疏開)된 사람들의 생활경험은 전쟁피해의 범주로서 부각되지 못했다. 또, 무수히 많은 포로통계는 존재하지만, 이 포로들이 한국전쟁의 ‘인적 피해’로 통합되지는 않는다. ‘전사’와 ‘부상’이라는 군인의 인적 피해 범주에 ‘포로’는 과연 어디에 위치해야 할까?

## 2. 연구의 대상과 자료

이 글은 한국전쟁의 전쟁피해로 범주화되지 않은 복합적인 전쟁피해의 문제를 ‘포로수용소’의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수용, 재산권 침해, 주민 소개, 복귀 등과 관련해서 제기하려는 의도를 갖는다.

한국전쟁기 포로수용소는 ‘빨치산’ 등을 수용했던 광주중앙포로수용소를 제외하면, 전부 유엔군에 의해 건설되었고 관리되었다. 한국전쟁 시기 포로수용소라고 하면 ‘거제도포로수용소’를 떠올리기 쉽지만, 1952년 포로의 재분류 이후<sup>6)</sup> 남한의 전쟁포로 수용소는 유엔군 관리 아래 모두 16개소가 되

5) 이러 작업에 대한 시론적 시도로는 김민환·강성현, 「한국전쟁 피해 통계의 정치, 2013 후기사회학대회 발표문이 있다.

6) 1950년 12월부터 미군은 포로의 ‘자원송환원칙’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미국은 정전협상이 파행되더라도 ‘자원송환원칙’을 고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원칙은 제네바협약의 심대한 위반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감수하고서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일종의 “정치적 행위” 또는 협상이었다. 물론 북한과 중국은 ‘자원송환원칙’을 적극 반대했다. 이 원칙 때문에 포로의 재심문과 재분류, 수용소 추가 설립이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다(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1, Document 276, *Memorandum by the Executive Secretary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Lay) to the President*, Washington, September 24, 1952. pp.533-538.

었다.<sup>7)</sup> 1952년 4월까지 거제와 부산에 수용된 178,073명의 포로<sup>8)</sup>들은 ‘자원송환원칙’에 입각한 송환여부 심사를 받았다. 그 결과 유엔군사령부는 포로를 송환과 미송환자로 구분하고, 경비와 감시 병력을 증강해 포로에 대한 압도적인 무력 사용을 하기로 했다. 기존의 거대 수용동에 수용되어 있던 포로들을 500명 규모의 작은 수용동에 분산 수용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서 새로운 포로수용소 건설이 필요했다. 특히 송환을 희망하는 포로들은 민간인이 완전히 소개된 섬에 건설된 수용소에 수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결정되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 수집과 첩보 작전이 강화되었다.<sup>9)</sup> 이러한 포로수용소 정책의 변화로 육지와 섬에 각각 총 12개의 새로운 포로수용소가 설립되었다.<sup>10)</sup>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은 육지에 새로 설립된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으나, 송환을 원하는 포로들은 제주도나 통영의 용초도와 봉암도에 개설된 수용소에 수용되었다. 많은 경우, 이 수용소들은 국방부나 정부가 소유한 토지를 활용하여 건설되었으나, 몇몇 수용소의 경우 민간 토지나 가옥 등을 강제 수용한 사례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강제 소개되어 또 다른 수용소에서 생활해야만 했다. 이들은 토지와 재산을 징발당하고 생명마저 위협받아야 했을 정도로 고초를 겪었다. 또한,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 시설이 사라질 때 원래의 마을로 복귀한 주민들은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전의 마을 모습을 찾고자 복구에 나서야만 했다. 건물 및 토지 사용에 대한 보

7) 북한 및 중국인민지원군 관리 아래 국군 및 유엔군을 대상으로 하는 포로수용소는 모두 14개소가 있었다.

8) RG 554,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1, Office of Provost Marshal, Statistical Reports Relating to Enemy Prisoners of War, 1950-53, Entry 222, Box 1, *Statistics, Prisoner of War Rosters and Statistical Reports*, 09/08/1952 - 09/24/1953.

9) RG 338, Eighth U.S. Army, Military History Section, Entry A1 224, Box 1650, Enemy Prisoner of War Records, 1951-53, Final Report to Control Prisoners of War, HQ KCOMZ, The Handling of Prisoners of War during the Korean War, June 1960; Karl W. Gustafson, “The Korean Second Front: Prisoners of War”(US Army War College, Student thesis, 1963. 3), p.43.

10) 1952년 4월 16일 제4영천(민간인인력유자), 제5상무대·제6논산·제7마산포로수용소를 비롯하여 1952년 12월 제4A대구노동수용소, 1953년 1월 인천 제10부평포로수용소 등이 육지에 설립되었다.

상에 있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 매우 많다.

이 글에서는 1952년 이후 새롭게 건설된 세 곳의 포로수용소를 소재로 하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 통영의 봉암도(지금의 추봉리)과 용초도(지금의 용호리)에 설치된 유엔군 관할 포로수용소이다.<sup>11)</sup> 이 두 곳은 포로수용소 설치를 위해 민간 토지나 가옥 등을 강제 수용했던 곳이다. 이를 위해 쫓겨난 주민들은 ‘소개민수용소’ 등에 수용되어 어렵게 생활하다 정전 이후 토지를 돌려받아 마을로 복귀했다. 두 번째 사례는 제주도 서귀포시 모슬포 일대에 설립되었던 포로수용소이다(이하 ‘제3모슬포수용소’).<sup>12)</sup> 이곳은, 앞의 사례와는 다르게, 군이 소유한 토지를 이용해서 포로수용소를 만들었고, 그 이후로도 쪽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곳이다. 이 사례는, 일본군에 의해 수용되었고, 이후 미군정에 의해 관리되다가 국방부로 이관되었으나, 1952년 포로수용소의 설치를 계기로 유엔군이 관할하게 되었던 곳이다. 현재는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다. 마지막 사례는, 지금의 제주시 용담3동(수근동, 다끄네 일대) 제주국제공항 주변의 포로수용소이다(이하 ‘제8제주시수용소’).<sup>13)</sup> 이 사례는 군 소유 토지의 사용 및 민간 소유 토지의 징발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곳이다. 포로수용소 건설 당시에 이 민간 소유의 토지에는 민가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간 소유 토지의 징발이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 사례와 연관해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례들을 직접 연구한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유사한 문제의식에 대한 수행된 연구도 극히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의 도움을 거

11) 용초도 포로수용소는 1952년 6월 19일 제18포로구역수용소라는 명칭에서 8월 17일 유엔군 제1B용초도분소수용소로 변경되었으며, 3개 구역에 18개 수용동으로 약 8,0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봉암도 포로수용소는 용초도와 같은 시기에 제19포로구역수용소라는 명칭으로 출발해 7월 10일 민간인역류자수용소로, 8월 17일 유엔군 제1C봉암도 민간인역류수용소라로 변경되었고, 3개 구역 16개 수용동에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12) 이곳은 1952년 4월 18일 유엔군 제13모슬포전쟁포로구역수용소(UN PWE #13)에서 1952년 8월 17일 유엔군 제3모슬포전쟁포로수용소(UNC PW Camp # 3, Mosulp'o)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대만행을 희망하는 중국인민지원군 포로들이 수용되었다.

13) 이곳은 1952년 6월 19일 유엔군 제21제주시포로구역수용소(UN PWE # 21)로 지정되었다가 8월 17일 제3A제주시포로수용소(UN POW Branch camp # 3A), 다시 12월 유엔군 제8제주시포로수용소(UNC PW Camp # 8, CHEJU City)로 각각 명칭이 바뀌었으며, 중국으로의 송환을 희망하는 중국인민지원군 포로를 수용한 포로수용소이다.

의 받지 못하지만, 이 글에서는 몇몇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을 듯 하다. 봉암도와 용초도 주민들이 국방부에 토지 해제 및 보상을 요구한 문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소장된 포로수용소 문서, 국방부에서 정리한 몇몇 자료 등이다. 두 섬의 주민들이 소장한 자료들은 1965년 이후 국방부로부터 받은 해제증과 보상 자료들은,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공개된 바가 없는 것들이며 어쩌면 국내에서는 유일한 자료일지도 모른다. 특히 유사한 사례인 거제도나 영천 등지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서가 나오지 않았다. NARA에 소장된 포로수용소 관련 설치 및 건설, 토지수용 문서는 RG 338(미 육군 작전, 기술, 보급, 조직문서), 407(미 육군 부관실 문서), 554(극동사령부, 유엔군사령부, 연합군총사령부 문서), 토지대장 등도 유용한 자료들이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기억하는 소개의 기억과 소개민 수용소 생활, 복귀 이후 토지 이용 및 군용지 해제 등에 대한 구술 자료들이다. 이것은 부족한 문서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고 생생한 경험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세 가지 자료들이 이 글에서는 활용될 예정이다.

## II. 포로수용소 건설 및 토지 사용(징발)의 문제와 주민들의 경험

### 1. 토지 소유와 유엔군에 의한 토지 사용 문제

이 글의 연구대상인 세 곳의 포로수용소는 모두 유엔군에 의해 건설되었다. 그런데, 유엔군이 이들 지역의 토지를 사용하려면 한국정부와의 교섭이 필요했다. 국방부 등 정부 소유의 토지라면, 그 절차가 비교적 간단했을 것이지만, 민간 소유의 토지라면 정부에 의한 토지 징발과 그것을 유엔군에 이양하는 ‘이중의 과정’이 필요했다. 유엔군은 1951년 1월 10일 거제도에 포로수용소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섬을 방문하고 1월 20일 곧바로 2020 공병대와 8206 육군부대 등을 투입했다.<sup>14)</sup> 그러나 부지 선정에서 수용과정까

14) RG 338, Eighth U.S. Army, Military History Section, Entry A1, 224, Box No. 1660, Enemy Prisoner of War Records, 1951-53, *Logistical Support to Prisoners of War*,

지 한국군이 유엔군에게 이양하는 문서나 협약서 등을 작성했는지 알 수 없다. 특히 포로수용소 건설 과정에서 거제 주민들과 용초도와 추봉도 주민들은 “수용소가 들어서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간 토지가 수용소 부지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그 절차가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정부가 민간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징발할 수 있게 된 법적 근거는 1950년 7월 26일 대통령 긴급명령 제6호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에서 기인한다. 제1조에서 “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작전상 필요한 군수물자·시설 또는 인적자원(이하 징발목적물 또는 피징용자라 칭한다)을 징발 또는 징용”한다고 정의하고 있다.<sup>15)</sup> 민간 토지는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2와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징발관이 발행하는 징발영장으로서” 징발되었다.<sup>16)</sup> 이 법적 근거에 따라 징발 영장은 징발 소유자의 주소를 둔 관할 시·도·읍·면장 및 경찰서장 등에 교부했다. 제7조에서 ‘징발 목적물’은 건물 및 토지를 비롯한 인적자원 등이다. 제14조에서는 “징발 목적물 피징용자에 대하여는 따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 또는 보상을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1950년 8월 21일에는 징발에 따른 “징발 보상령”을 시행했다. 제2조에서 “징발한 물자 또는 시설은 원상으로 회복하되 멸실(滅失)되었거나 소모 또는 훼손이 심하여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불한다. 단 소모 또는 훼손의 정도가 경미할 때에는 원상회복이 그 소모 또는 훼손한 부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sup>17)</sup> 이처럼 정부는 징발의 목적과 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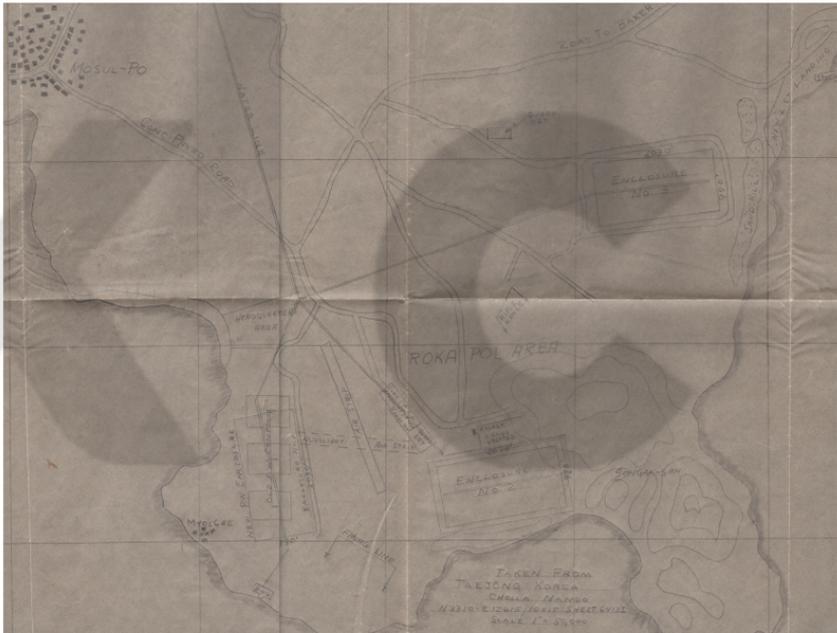
*8086th Army Unit, July 1951-July 1953.*

15) 『韓國戰亂 一年誌』, C54~55쪽.

16)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1조에는 “제2조 징발 또는 징용은 징발관이 발행하는 징발영장 또는 징용영장으로서 이를 행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징발관은 국방부 제1국장, 특명의 사령관, 육·해·공군총참모장, 군단장·사단장·위주사령관인 독립단대장, 통제부사령관 겸 경비부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 비행단장 등이다. 제4조에는 “징발영장은 징발목적물의 소유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시장·경찰서장·읍·면장에 교부하며 이를 집행케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시행령」 제5조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승 제4조 1항 단서의 ‘긴급을 요하는 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투로 말미암아 행정기관 또는 선박회사 사장이 당해 징발 목적물의 소재지 또는 피징용자의 주소지에 없는 때. 2. 사태 긴급하여 행정기관 또는 선박회사 사장으로 하여금 징발 또는 징용을 집행케 할 여유가 없을 때.”(『韓國戰亂 一年誌』, C53쪽)

까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상태였다.

그런데, 민간 토지 징발과 관련된 이런 법적 절차가 그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힘들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이와 관련된 징발영장을 제시받은 경험이 없다고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징발영장 자체가 발급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발급된 징발영장을 교부받은 관할 면장 등이 주민들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하는 점을 따져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1952년 9월 1일 3모슬포수용소 구역도  
(RG 407, Entry NM-3 429A, Box 6244).

국방부 등 정부 소유의 토지를 유엔군에게 제공하여 포로수용소를 건설하도록 한 사례는 제3모슬포수용소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부지는 한때 민유지였으나, 일본 식민지시대 말기 일본 해군성 소유지로 바뀌었다가 해방 직후 미군에 점령되었다.<sup>17)</sup> 제3모슬포수용소의 부지는 1936년과 1944년 사이

17) 『韓國戰亂 一年誌』, C58쪽.

민간 소유 토지를 해군성이 매입한 것이다.<sup>19)</sup> 포로수용소 부지가 표시된 지도를 보면 1구역은 모슬포 하모해수욕장 인근, 2구역은 송학산 아래 올레5 경편선 부근, 3구역은 상모리 형제해안로의 모래사장과 가깝다. 특히 제3모슬포수용소 부지 내에 알뜨르 비행장(K-40)이 포함되었다. 이 부지는 1933년 7월 4일 사세보진수부(佐世保鎮守府)사령관이 해군대신에게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1932년 8월 9일부터 1933년 3월 10일까지 제주도 대정면 상·하모리 일대에 사세보진수부 관할 제3구(제주도 방어구)에 ‘제주도 비행기 불시착 육장용(陸場用)’ 60,242평(199,147평방미터)이 1차 매입되었고, 1936년 11월 13일부터 1937년 3월 26일 147,257평(486,800평방미터)이 2차로 매입되었다.<sup>20)</sup>

제8제주시수용소는 정부 소유의 정뜨르비행장(현재의 제주국제공항 내) 일부와 민간인 소유 토지를 징발하여 건설되었다. 1944년 제주도 항공기지(정뜨르)는 토지 2,200,000평방미터, 비행장 1,200,000평방미터, 유도로 100,000평방미터, 暗體 20개소, 터널 1식, 유도 57,000평방미터, 청사 2동, 사관 막사 2동, 병사 17동, 공장 17동, 격납고 13동, 전신소 7동, 병사 3동, 창고 11동, 부계가 16동, 잡공작물 1식, 숙사 15동, 전기설비 1식, 급수시설 1식의 규모였다.<sup>21)</sup> 이 부지들은 1944년 8월 16·18일, 11월 30일과 1945년 1월 11일 사이에 일본 육군성에 넘어갔다. 그 뒤 미군은 제주시와 모슬포 지역의 공항을 점수하고 그대로 운영했다. 1948년 7월 31일 20보병연대가 미군정청에 Camp Cheju-do(K-37, 지금의 제주공항) 내 부동산 현황을 보고했는데<sup>22)</sup>, 미군이 소유한 토지 및 건물은 총 34개 건물과 구 일본군 비행장

18) 극동공군은 1945년 10월 21일에 “GHQ에 제주도 정뜨르 비행장을 비롯한 5곳의 비행장을 미군에서 운용해야 한다”고 보고했다.(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Part I, Adv. Echelon FEAF, letter to CINCAFPAC, “Release of Japanese Airfields”, 21 Oct. 1945 (X X IV Corps G-3 files)&Radio FEAF Adv to CG X X IV Corps, 011937/I Nov. 45).

19) 이점은 이 구역 토지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 佐世保鎮守府司令長官, 「第2373号 12.7.1 土地買入の件 朝鮮全羅南道濟州島大靜面」, 『公文備考 昭和12年 K 土地建築』卷9, 昭和12年7月1日 (아시아역사자료센터 레퍼런스 C05111121000).

21) 海軍省, 『濟州島航空基地, 『鎮海警備府 引導目錄』(아시아역사자료센터 레퍼런스 C0801-0531800).

건물 등이었다. 1948년 9월 17일 6보병사단 20보병연대는 같은 해 7월 31일 현재 33개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부동산 내역을 사단에 보고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미 6사단 20연대 소유 제주도 기지 부동산 현황<sup>23)</sup>

빌딩 번호	건설날짜	면적	용도
1	1945. 9. 15	4,266	사병 보급소 및 본부
2	1945. 9. 15	2349	Motor pool
3	1946. 11.	960	식당
4	"	960	휴게실
5	"	960	장교 막사
6	"	1056	세탁실
7	"	56	화장실
8		960	중대 사무실
9		1160	사병클럽&도서관
10		960	휴게실
11		960	사병막사
12		960	사병막사
13		960	제조실
14		960	독신 장교막사
15		1485	유지보수
16		960	PX
17		192	식당
18	1946. 11.	1011	창고
19		448	샤워실
20		264	화장실
21		960	보급소
22	1945. 11. 1	1479	독신 장교막사
23		170	세탁소
24	1945. 9. 9	238	Store room
26	1947. 6. 1	1330	dep house

22) RG 554, General Correspondence Files, 4/1944 - 1948, Entry A-1 1378, Box 134, Bulk Declass E. O. Misc. Series, Area No. 8, SUBJECT : Notice of Intent Vacate, 31 July 1948.

23) Ind. SUBJECT : Release of Real Estate at Cheju-Do Island, 17 september 1948.

27		1170	”
28		1170	”
29		322	병영
30		1200	초소
31	1948. 4.	1200	장교클럽
32	”		물탱크
35	1946. 11.	91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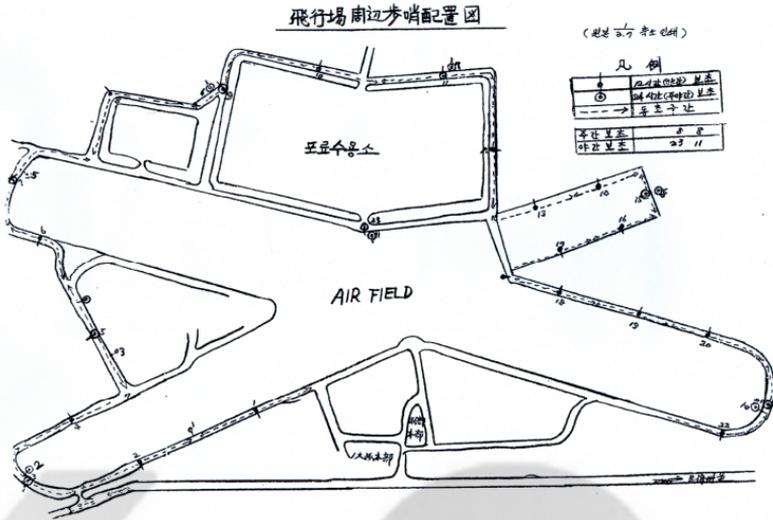
이 부지들은 최종적으로 1949년 1월 29일 미군정청에 미군 소유 부동산으로 신고되었고, 한국정부에 반환되었다.<sup>24)</sup> 미군정은 조선에서 각종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개인 토지를 징발할 경우 다음과 같이 별도 규정하고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보면 “점령군은 자산을 징발할 수 있고 점령된 국가의 공공 부동산을 보상 없이 사용할 수 있다”<sup>25)</sup>고 규정했다. 하지만 미군정은 “점령군이 자산을 징발해 사용하더라도 소유권을 양도받는 것은 아니었다. 사용자는 자산에 손상을 입히지 않아야 하고 점령이 끝날 때 그 자산을 돌려주어야 한다”<sup>26)</sup>며 무상사용 뒤 돌려주었다. 미군 철수를 앞두고 1948년 9월 11일 한미행정이양과 관련해 「대한민국정부 및 미국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에서 미군이 소유한 국유재산 일체를 한국정부에 이양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일본인 적산과 사유재산이 모두 한국정부에 이양된 것이다.<sup>27)</sup> 따라서 정뜨르 비행장은 앞의 협정에 따라 국방부에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24) RG 554, General Correspondence Files, 04/1944-1948, Entry A-1 1378, Box 115, Lt. Gen. John R. Hodge Official File, 1944-48, AG File 602.

25) Ibid., Annex to Hague Convention No. IV, Articles 52-56. For text see TM 27-251, Treaties Governing Land Warfare. PP. 33-35.

26) PM 27-10, Rules of Land Warfare p. 81.

27) 『서울신문』, 1948년 9월 14일.



<그림 2> 8제주시수용소 구역 및 정뜨르비행장  
(육군본부, 『韓國戰爭史料』 85, 286쪽).

그러나 1952년 6월 19일 전후 정뜨르비행장과 제주시 수근동(水根洞, 다끄네 마을) 민간 소유 토지 일부가 제8제주시수용소로 수용되었다. <그림 2>는 제8제주시수용소 배치도인데, 여기서 포로수용소로 표시된 곳이 지금의 용담3동이며, ‘AIR FIELD’는 지금의 제주국제공항의 확장공사 이전의 활주로이며, ‘사령부’는 지금의 공항청사 부지에 있었다. 이 그림에서 ‘포로수용소’로 표시된 곳이 민간 소유 토지였다.<sup>28)</sup> 그런데, 이 민간 소유 토지가 징발될 때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토지 소유자들에게 어떻게 통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통영의 두 섬과 비교했을 때, 이곳에 거주했던 주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2. 포로수용소 건설 과정과 주민들의 소개 경험

통영의 용초도수용소와 봉암도수용소 건설 과정은 주민의 시각에서 증언된 바 있다. 이들의 시각으로 포로수용소 건설 과정을 살펴 보자. 1952년 6

28) 토지대장에서 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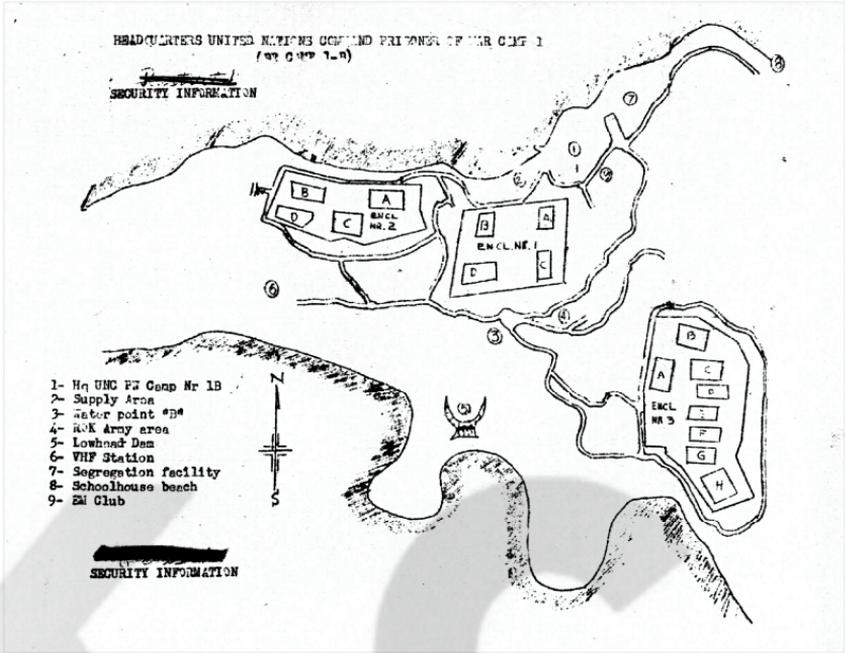
월 7일 해군 수중 폭파팀이 해변과 해안 조사를 실시했는데,<sup>29)</sup> 이를 목격한 주민들이 몇 명 존재한다. 6월 13일 해군은 수용소 위치 및 해변의 LST 접근 가능성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뒤 6월 16일 제409공병여단·제79건설공병대대(미군), 104건설공병대대(한국군) 등이 용초도와 봉암도에 상륙했다. 주민들은 “수심 조사 이후 약 10일 혹은 20일쯤 지나서 다시 LST가 용초 마을 바다에 나타났다. 이 수송함은 통영 방향에서 용초 작은 마을 해변의 일명 ‘미군바위’에 도착했다. LST가 작은 섬처럼 보였는데 모래사장 해변에 도착 하더니 큰 문이 툭하니 열리면서 제일 먼저 불도저가 나오는 것을 봤다”고 동일한 증언을 했다.<sup>30)</sup> 봉암(추봉)도 수용소 사령부에서 근무한 주민 손귀진은 “큰 배(LST)가 아가리처럼 입을 벌리니까 불도저부터 나오면서 산으로 올라가면서 밭과 고랑, 담 모두 밀면서 순식간에 집들을 집어 삼켰다. 전부 미군이라 의사소통되지 않아 항의도 못한 상태에서 다음날 아침 한산면사무소에 찾아간 마을 이장은 먼 직원을 데리고 왔지만, 먼 직원조차 수용소 설치 사정을 전혀 몰랐다는기야”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며칠 뒤 미군들이 손귀진 등 여러 주민들에게 찾아와서는 “24시간 내에 나가라고 했다”고 한다. 손귀진은 “가축은 그대로 두고 소만 데리고 각종 가재도구를 챙겨 강제 이주를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내가 나올 때 보니까 미군이 초가집에 불을 지르 대. 주민들이 자기 집들이 불탄다고 다들 울고 난리가 아닌기라”라고 강제 소개를 설명했다.<sup>31)</sup>

수용소 건설로 용초도의 큰 마을과 작은 마을 주민들은 한산도 진두, 곡용포, 하포, 입정포, 비진도 등에 이주했다. 대규모의 소개민 수용을 위해 한산면 진두마을, 지금의 한산농협 자리에 천막과 판잣집 등이 개설되었다. 봉암도 주민들은 하포-의암 중간 지점에 있는 소개민 수용소에서 생활했다. 소개민 수용소는 한 가구당 처음에 흰색 텐트 하나를 배당받았고 취사는 밖에

29) RG 554, 383.6: [POWs Situation Reports; Procedure for Processing, Return and Reassignment of Exchanges in Korea; Recovered US Army Prisoners of War, etc.], United Nations Command, 1952. 6.

30) 구술, 서정식(78세)·김남조(75세)·김두진(70세)·김종근(67세) 이상 용초, 강덕환(90세) 호두, 2015. 7. 28, 9. 18·19.

31) 구술, 손귀진(1932년생, 85세, 예곡, 수용소 사령부 민간인 근무자), 정양덕(78, 추원), 박종호(1938년생, 78세, 추원), 정현권(1940년생, 76세, 예곡), 2015. 7. 28, 9. 18~19. 손귀진은 당시 22세로서 1952년 7월부터 1953년 10월 수용소 폐쇄까지 근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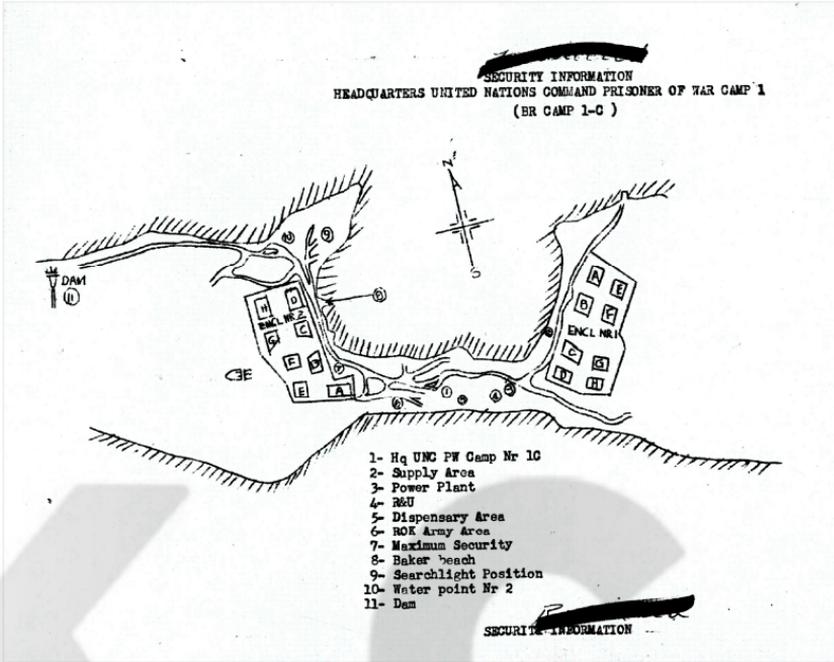
<그림 3> 1953년 1월 용초도포로수용소 전체 구역도.  
지도 상단에서 왼쪽이 1구역, 오른쪽이 2구역이며, 하단 오른쪽이 3구역.

서 술을 걸어놓고 해야 했다. 한겨울부터 판자집에서 생활하던 주민들은 전체 20칸 정도 규모에서 낮은 생활을 이어갔다. 수용소 배급 품목은 옥수수나 분유 가루, 밀과 밀가루, 설탕 등이었다. 주민들은 대부분 일과를 겨울에 땀감을 마련하거나 봄에 썩을 캐는 일로 보냈다. 특히 남의 마을에서 땀감을 놓고 자주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sup>32)</sup>

봉암도 소개민 수용소의 배급은 용초도 주민과 동일하게 밀가루, 겉보리, 수수, 분유, 안남미(安南米 또는 인디카 쌀, 일명 알랑미) 등 주로 미국산이었다. 배급은 다섯 식구 중 2 식구만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었다. 특히 소개민 수용소에서 다수의 노약자가 전염병 또는 신경쇠약 등으로 사망해 인근 야산에 가매장할 수밖에 없었다.<sup>33)</sup>

32) 구술, 김남조(75세)·김두진(70세)·김종근(67세), 2015. 7. 28.

33) 구술, 손귀진, 2015. 7. 29.



<그림 4> 1953년 1월 봉암(후봉)도 수용소 전체 구역도.  
 지도의 왼쪽 추원마을이 제2구역, 오른쪽 예곡 마을이 제1구역임.  
 중앙 부분 언덕이 IC 민간인억류자수용소 사령부가 위치함.

용초·봉암도 수용소 사례는 아니지만, 동일하게 민간인이 소개된 거제도 포로수용소 소개민들 1,685세대들(지금의 고현·장평동과 수월동 일대)도 1952년 5월 연초면 다공리와 연사리 일대, 사등면 사등리 사곡에 소개민수용소를 개설해 임시 거주했다. 김관식(장평거주)은 “장평 사람들은 사등면 사곡으로 소개되었제. 소개민들이 사등 성내 공단 옆에 부두를 중심으로 소개민수용소가 만들어졌는데 주민들이 직접 맹글었다카이. 낮엔 소개민들이 산으로 가서 직접 나무를 해서 직접 수용소를 지었다”<sup>34)</sup>라고 한다. 주민들은 “툃나물 밥, 무 밥, 바다에서 조개도 캐 묵고 했제”라고 미군으로부터 별도 배급을 받지도 못했다. 수월에서 소개민 김달호는 연사 소개민수용소에서 생활하다가 거제도포로수용소 민간요원으로 취업했다.

34) 구술, 김관식, 88세, 거제시 장평동 거주, 2015. 6. 9.

“미군이 탱크를 몰고 와서 포로들을 몰살시키려고 주민들을 소개한다는 소문이 파다했제. 어느 날 미군들이 와서 24시간 내에 집을 비우라고 하네. 그래서 주민들은 연초국민학교나 한내, 장승포, 마전 등지로 뿔뿔이 흩어지고, 연사에 소개민수용소가 맹글어졌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은 못자리를 꽃아놓고 안 갔나. 소개 나가서 시집간 할머니는 수용소에서 밖에 밭도 못해 묵고, 산에서 나무해서 살았제. 다른 사람들은 연초 들녘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소작이제. 그 품삯 받아서 목심을 유지하고, 남자들은 다른 집에 머슴살이하고, 또 다른 할마시는 밤중에 몰래 소개된 집에 갔다가 잡혀오기도 했었제.”<sup>35)</sup>

이처럼 소개민들은 수용소 생활에서 미군이나 정부에서 보급마저 없어 산에서, 들에서 끼니를 해결하거나 다른 집의 머슴살이 등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었다. 같은 경험을 겪은 김종립은 “흰 척막생활은 한 달 반이었고 주민들이 약 80호인데 우리 가족은 연초국민학교 운동장에서 한 달 정도 생활하다가 다시 연사 들판에 소개민 수용소가 설치되었는데 수용소는 10칸 남짓이고 미군이 지원한 판자였다. 소개민 수용소 건설은 흥남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미군으로부터 품삯을 받고 직접 건축하는 것을 봤다”고 한다. 그는 수용소 하루 일과에 대해 “매일 땀감 한다고 산으로 쓰대 땀기고, 학교에 가면 밀을 점심밥으로 먹고, 그래도 개중엔 내가 잘 묵은 축에 들었다”<sup>36)</sup>고 한다. 이처럼 용초나 봉암, 거제도 소개민들은 갑작스러운 미군의 소개와 소개민 수용소 생활을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제3모슬포수용소와 제8제주시수용소 건설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이런 증언이 현재로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들 수용소의 건설과정은 미군의 문서 등에 의해 알려져 있는데, 그 간략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제3모슬포수용소는 1952년 2월부터 미 군사고문단 산하 제1육군훈련소와 알뜨르비행장 옆에 부지를 확정 후 공사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수용소 건설 지침(1952. 1, 극동사령부)에 따라 1952년 2월 22일 제202건설공대대 B중대(한국군)가 모슬포에 도착해 수용소 건설 임무를 시작했다. 4월 20일 미군 장교 5명, 하사관 1명, 사병 11명이 모슬포에서 건설 감독에 참여했다. 7월 26일 3개 구역 수용동 건설이 진행되었고 9월 6일 기본 건설공사가 완료되었다. 수용동 공사

35) 구술, 김달호, 84세, 거제시 수월동 거주, 제1거제도포로수용소 사령부 식당에서 민간요원으로 근무, 2015. 6. 12.

36) 구술, 김종립, 79세, 거제시 수월동 양정마을, 2015. 6. 12.

는 8월 11일 60% 공정을 보여 9월 1일 완료되었다.

제8제주시수용소는 1952년 4월 25일 제주공항에 2개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인수받았다. 그 뒤 6월 6일 미 해군은 제주도 제주공항 인근 바다에서 수륙주정(LST)의 접안이 가능한지 수심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6월 10일 수용소 건설공병대(제79 미 건설공병대대, 한국근무중대 104전투건설대대)가 제2병참기지사령부 명령에 의해 제주도로 출발했다. 6월 12일 수용소 구역 건설은 97% 완료되었고, 16일부터 영구적인 포로수용소 수용동 건설이 시작되었다. 7월 11일 구역수용소 건설이 완료되었으나, 8월 11일 모든 수용소 공사가 완료되면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제주와 통영 지역 포로수용소 수용동의 규모는 500명 단위이며, 울타리 높이는 약 9ft, 매 구역마다 4×6in로 초소를 4×4in 규모로 건설되었다. 수용소 건설은 제2병참기지사령부(2rd Logistical Command, 부산)에서 부지 정리, 전기, 식수 및 저수지, 공병 기술자 등을 파견하고 관리·감독하고 있었다.

### Ⅲ. 군사시설 ‘해제’ 과정과 공동체의 대응

#### 1. 군사시설 해제와 보상 문제

통영의 두 수용소는 1952년 6월 15~1954년 1월 22일까지 강제 징발되었는데 주요 토지 현황은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징발해제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추봉리 봉암도(지금의 추봉도) 수용소 부지는 밭 52,734평과 논 14,218평, 대지 2958평, 건물 89동, 임야 15448평, 우물 2개소, 사설서당 4칸 등이다.<sup>37)</sup> 용호리 용초도는 토지 중 밭 99,031평, 논 55,834평, 대지 6,685평, 임야 255,899평, 건물 209동 1,775평, 어항 방파제 2개소, 우물 3개소 등이 강제 징발되었다. 호두동은 밭 39,502평, 담 45,805평, 임야 155,780평이다. 추봉리 추원동은 밭 70,434평, 논 19,722평이고 대지 5,505평, 임야 230,569평이며 건물 129동 1,108평이며 어항 2개소, 우물 3개소였다. 추봉리 예곡동은 밭 57,255평, 논 15,324평, 대지 3836평, 임야

37) 「秋元收容合書被害調書」

316,215평, 건물 440동 3,738평이고 어항 6개소, 우물 7개소 등이 징발되었다.<sup>38)</sup> 이들 토지와 가옥 등은 1965년 4월 8일 국방부로부터 징발 해제증을 받았다(<그림 5> 참조).

<표 2> 추봉리 토지 징발해제증 현황<sup>39)</sup>

지번	구역	부속건물	원 소유자
추봉리 116, 133, 201~203, 273, 304, 208, 31-2, 31	1		李康漕 논 2,306평
추봉리 12, 31-1, 248, 251-2, 275, 12-1, 20-3, 26			李元宰 논 1,400평
169-2, 300-2, 305-2, 189, 195-1, 111			丁天煥 밭 2,964평
추봉리 256번지	2	수용동	양재용 밭 2239 논 275평 대지 65평
추봉리 195번지			정봉익 밭 1692 논 845
추봉리 146			정원준 밭 1641 논 2411 대지 94

1962년부터 이 두 마을의 주민들은 토지 징발 해제를 신청하기 시작했다. 1962년 8월 23일 용호리 용초도 최성현 외 127명, 용두 마을 김정원 외 109명, 추봉리 봉암도 이홍실 외 80명, 예곡 마을 이경준 외 47명은 국방부장관에게 1952년 6월 15일부터 1955년 3월 2일까지 2년 9개월 17일간 징발보상신청서를 제출했다. 전답 피해액 산출은 평당 연간 30원으로 3개년분을 계상했고, 전답 복구비는 평당 60원으로, 대지 피해액은 평당 연간 30원으로 3년분, 대지 복구비는 평당 60원으로, 임야는 지상물 피해액 평당 10원으로, 건물(가옥) 복구비는 건평당 4,000원으로 계산했다. 전체 피해액은 53,072,980원이었다. 1968년 8월 3일 국방부에서 받은 보상금액은 수령총액

38) 龍虎·秋峰里, 「被徵發 補償申請」, 1962년 8월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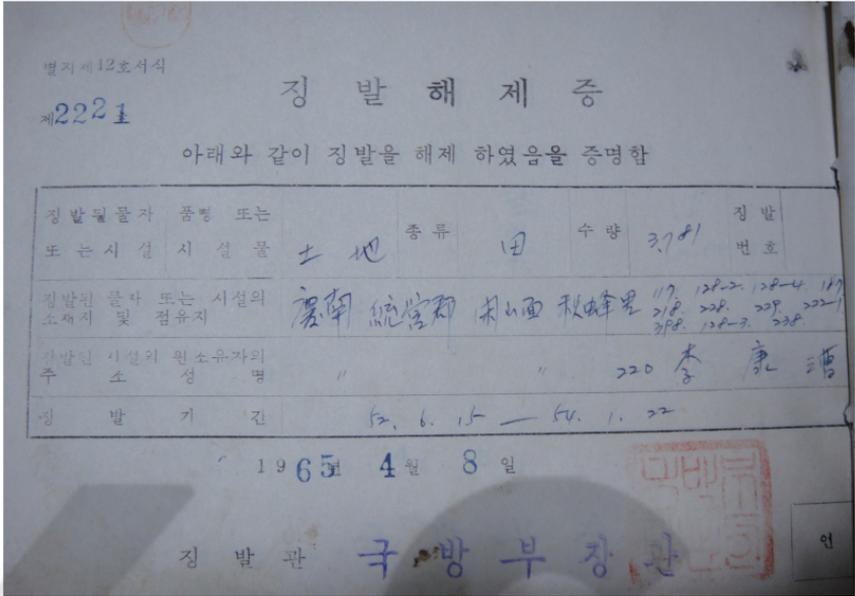
39) 국방부, 「징발해제증」, 1965년 4월 8일.

1,260,000원, 경비 공제금 214,000원, 공제 잔액 1,045,800원, 대상자 지불액 933,733원, 인출 잔액 112,067,000원, 동 자체 공익 수입금 69,554,000원이며 전체 총액 183,621,000원이었다. 1964년 4월 10일 봉암도 내 추봉리 예곡 마을 사람들은 「미확인정발재산신고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앞의 1962년 8월 1차 신고에서 누락된 제1C봉암도 수용소 1구역 예곡마을이다. 이 신고서는 정발일을 1952년 6월 16일부터 1955년 3월 2일까지라고 명기하고 있다. 실제 포로수용소가 운영된 시기(1952. 6. 19~1953. 12)와 정발된 날짜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소개와 복귀 과정이 수용소 철거와 다르다는 의미이다. 용초도 주민들은 제1B용초도포로수용소의 폐쇄와 이어서 귀환포로 집결소 개설 등으로 실제 복귀 자체가 늦었다. 집결소는 1954년 3월까지 운영되었으나 건물 철거와 정리 등으로 1955년 3월까지 이어졌다. 따라서 주민들은 1955년 3월 이후에야 복귀할 수 있었다. 다만 추봉도 주민들은 1953년 12월 수용소 폐쇄이후 건물 철거와 정리 때문에 1954년 1월부터 복귀할 수 있었다.<sup>40)</sup> 참고로, 거제도포로수용소 소개민들은 1955년 5월쯤에 복귀할 수 있었다. 미군과 국방부는 1954년 8월 7일 거제도 포로수용소 부지와 건물 884동을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거제도수용소 부지와 건물들을 사회부에 이관한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1954년 11월 1일에 가능했다. 그러나 사회부는 주민들의 복귀를 위한 공사 지원이나 향후 대책 등에 손을 놓고 있었다. 따라서 1955년 4월 말 1,402세대(8,894명)가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토지보상과 토지구획 등을 담당하는 주민 자체 조직이 결성되었다.<sup>41)</sup> 앞의 용초와 추봉도 소개민들과 달리 거제도 소개민들이 국방부에 요구한 토지보상 서류 등은 현존하지 않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국방부는 1950년 7월 대통령 긴급명령 제6호 「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근거해 “원상회복 또는 보상을 한다”는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주민의 요구가 없었다면 원상회복이나 보상조치 실시하지 않으려고 했다. 군에 정발된 수용소뿐만 아니라 군사기지들은 전후 절차에 따라 원상회복되지 않았다. 1955년 11월 국회 국방분과위원회에서 제출한 군정발보상대책에 대한 건의안이 가결되었으나 1964년 2월 이전까지 유

40) 손귀진, 앞의 구술.

41) 『東亞日報』, 1954년 8월 6·16·17일, 11월 3일; 『京鄕新聞』, 1954년 5월 11일.



<그림 5> 1965년 4월 8일 국방부가 추봉리 이강조에게 발급한 정발해제증(손귀진 소장).

엔군의 정발 토지만 보더라도 단 한 건의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sup>42)</sup> 1964년 2월 1일 국회에서 유엔군 및 국군정발제재산보상금 지급 촉구 건의안이 통과된 후 유엔군에 의해 정발된 토지가 보상받을 수 있었다.<sup>43)</sup> 이 보상은 1966년 4월 예산 부족으로 다시 위기를 맞아 1968년 10월 군 정발 토지보상을 국채 또는 채권으로 보상하기 시작했다.<sup>44)</sup> 군이나 유엔군사령부에서 이미 정발해 사용하고 있는 임야 또는 토지는 약 1억 1백만 평인데 연차적으로 매입해 국유화되었다.<sup>45)</sup>

이처럼 5.16쿠데타 이후 한국전쟁기 민유지가 국유지로 되거나 부분 보상

42) 『東亞日報』, 1955년 11월 17일; 『경향신문』, 1959년 1월 15일. 유엔군정발보상촉진회는 1950년부터 1959년까지 유엔군에 정발된 토지가 8억5,754만3,652평, 건물이 175만 3250평에 달하고 있어 시가로 약1천억원이었다. 그러나 미군측은 “1952년 5월 24일에 체결된 마이어 협정에 의해 한국정부가 미국 정부에 제공해 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보상을 거부했다.”고 한다.

43) 『마산일보』, 1964년 2월 1·24일.

44) 『동아일보』, 1968년 10월 31일 1면.

45) 『매일경제』, 1966년 7월 22일 3면.

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심지어 징발 토지 보상 과정에서 군 내부의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보상금이 반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sup>46)</sup> 전쟁이라는 ‘비상사태’ 하에 민유지가 강제 징발되어 해제 또는 보상을 받았지만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했음을 앞에 사례에서 알 수 있었다.

## 2. 공동체의 대응

소개된 용초도와 추봉도 사람들은 포로수용소가 폐쇄된 이후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 1954년 3월 이후 귀환군 집결소<sup>47)</sup>가 해체되면서 한국군 경비와 공병대가 건물과 시설물 등을 철거했는데 전체 16개 수용동 중 5개가 주민들에게 양여되었다. 수용동은 두껍지 않은 시멘트 건물이고, 미군 사용 사무용 혹은 창고는 매우 두꺼운 콘크리트의 반영구적인 건물이었다. 사회부는 용초, 추봉도에 263채의 농가를 건설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이를 미8군에 요구한다고 발표했지만<sup>48)</sup>, 실제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주민들은 집결소가 해체되기 직전부터 마을에 들어와 주요 수용소 건물에 들어가 거주하기 시작했지만, 곡괭이 외에 다른 장비도 없이 건물 해체작업을 벌여야 했다. 다수 주민들이 심한 육체적 고통을 당했다. 특히 복귀한 주민들은 소개민수용소의 배급마저 끊어져 소가 먹는 보리껍질이나 쭉, 톱 같은 식물로 연명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군 경비나 공병대가 두고 간 시설물 중 철조망, 전선 구리, 수도관 등을 고물상에 판매해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징발보상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상을 받고자 시도했던 것이다.

제3모슬포수용소 부지들에 대해 1957년 5월 17일 제주 오라동 출신 의원 강경옥은 국방부 관리국 관재과 정 중령, 우 문관, 공군본부 시설국 김 소령 등을 대동하고 도내 군 징발 농토의 실태 답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5월 18일 모슬포 전 육군훈련소 자리를 비롯해 제주비행장 등 도내 농토 징발상황

46) 『동아일보』, 1961년 4월 17일 1면.

47) 국군귀환포로 집결소는 1953년 8월 5일부터 1954년 3월까지 기존 용초도포로수용소에서 운영했다. 귀환포로 출신자이자 『돌아온 패자』의 저자 박진홍은 “용초도 내 인민군 포로수용소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전체 3개 구역에 귀환포로들이 수용되었다”라고 말했다(구술, 박진홍, 2018년 4월 26일).

48) 『조선일보』, 1954. 1. 12 조간 2면.

住居家屋(建物)補償金支給内訳

草履金等 1,250

이공조	37,500	정생우	18,750
이편저	30,000	손덕봉	18,750
정천환	105,000	양현관	22,500
양저용	26,250	양종택	22,500
정봉익	90,000	정재모	18,750
정연준	26,250	정덕을	18,750
정흥안	26,250	김광직	18,750
이은저	26,250	김주옥	18,750
정신우	22,500	김순포	11,250
양명준	18,750	이광봉	11,250
정창환	26,250	이덕연	18,750
정덕기	18,750	이수경	18,750
이경도	41,250	이광열	18,750
김석을	22,500	정진안	22,500
이부조	22,500	이홍재	18,750
이성재	26,250	정봉준	11,250
정또수	18,750	정인호	11,250
이기문	22,500	정인환	33,750
김안은	63,750	정창우	18,750
김덕권	18,750	김석봉	11,250
정치권	22,500	정의근	11,250
공기동	18,750	김저식	11,250
조유복	11,250	이또년	국방부분부지출관
이훈재	18,750	이철재	재정사관 18,750
정공진	12,500		
		계	1,260,000

동 환

<그림 6> 보상금수급명세서. 이 문서는 “거주가옥(건물) 보상금 자체대조(초가 건평 당 1,250원)”을 주민에게 지급한 내역서이다. 국방부가 지급한 보상금은 토지보다 가옥보상이었다(손귀진 소장).

을 점검하고 “농토는 농민에게 반환토록 할 것”이라고 한다. 모슬포의 징발 토지는 전체 1천 정보에 이르렀다.<sup>49)</sup> 그 뒤 6월 17일 국방부는 대정읍의 진정과 주민의 요구로 모슬포비행장 주변 국유지 146,520평을 농경지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상모리 일대 농가 120호 농민들은 국방부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농토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sup>50)</sup> 이처럼 3모슬포수용소 인근 부지 일부는 국방부에서 소유하되 민간에 농토로 개방한 것이다. 그러나 포로수용소 사령부의 토지는 별도의 보상 없이 그대로 민간에서 소유하고 있다. 앞의 용초도나 거제도 사례에서 민간인 거주지가 징발되었다. 하지만 제주도 2개 수용소 토지 보상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지 않았다. 그 이유가 주민들의 거주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듯하다. 8제주시수용소는 제주공항(한·미 공군기지와 민간공항)이 사용하고 있었고, 3모슬포수용소는 한·미군 기지로 연속적으로 점거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토지 보상 요구하는데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제3모슬포 수용소 부지는 1969년까지 공군 308정보대대와 주한 한국공군고문단 15파견대에서 관리하고 있었다.<sup>51)</sup> 이처럼 모슬포수용소 부지가 토지이용 측면에서 군사기지에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군에서 오키나와와 제주도를 연결하는 군사기지 플랜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sup>52)</sup>

특히 모슬포 군사기지가 계속 이어지자 주민들의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1957년 9월 16일 주한 미국 원조 사절단(U.S. Operations Mission to Korea)의 정부 서비스실 지역사회개발국(Office of Government Services, Community Development Division)은 서귀포 모슬포 일대 210명을 대상으로 제주도 프로젝트(Chejudo Island Project)를 실행하였다.<sup>53)</sup> 이 프로

49) 「期待되는 軍徵發農土返還」, 『濟州新報』, 1957년 5월 18일 2면.

50) 「14萬6千坪을 農土로 開放 毛瑟浦飛行場邊國有地」, 『濟州新報』, 1957년 6월 30일 2면.

51) 「渴水地누비는 毛瑟浦駐屯美顧問團과 우리空軍 사랑의 給水隊」, 『濟州新報』, 1964년 11월 18일 2면. 1969년 1월 24일 공군작전사령부는 모슬포 레이더 기지(모슬봉)와 208경보대대 주변에 통금시간 및 통금구역을 설정해 발표했다(「軍作戰區域에 通禁」, 『제주신보』, 1969년 1월 25일 3면).

52) 정영신, 「오키나와(沖繩)의 기지화, 군사화에 관한 연구 - 기지의 건설, 확장과 반환의 역사적 과정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73권, 2007, 152~158쪽.

53) RG 469, Records of U.S. Foreign Assistance Agencies, 1942 - 1963, Unclassified Subject, Files, ca. 1955 - 11/03/1961, Entry P 319, Box 4, Cheju-do Training Center, April 20,

젝트에는 1958년 지역사회개발 훈련센터에 4만 달러 지원과 상수도 건설, 모슬포 마을 지도자를 비롯해 여러 명에게 농업과 위생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마을독서 클럽 조직, 고구마와 포도 재배까지 다양한 기술 전수를 담고 있었다. 제임스 존슨(James Johnson, 제주도 지역사회개발 훈련센터 교관이며 제주도에 2년 동안 거주함)은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에서 8제주시포로수용소 부지 내에 제주직업훈련센터 개설과 지역 공무원 및 마을 지도자들을 위한 공동 연수계획, 시범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자 했으며, 모슬포 내 각 리별로 기반시설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입안했다. 특히 프로젝트 안에는 육군 제1훈련소를 재건해 해병대에 이양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었다.<sup>54)</sup> 이 계획을 실행하기 앞서 국방부와 한국군은 제주 공항에 인접한 토지와 건물의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sup>55)</sup>

전쟁 이후 1956년 4월 28일 다끄내마을 지주들은 국방부에 ‘서비행장 서북측’ 농지 20만평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제주시는 제주도경비사령관과 협의해 지주들에게 4만평만 경작지로 반환할 예정이었다.<sup>56)</sup> 그러나 8월이 되어도 경작지 반환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같은 해 8월 17일 제주도지구경비사령관은 민간이 “군용지(제주비행장)를 무단출입한다. 엄중히 경고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사령관 조 대령은 “군에서는 비행장 보안을 위하여 철조망을 가설하는 한편 표식을 강구하고(중략) 제8포로수용소의 위치는 징발토지에 한하여 경작을 원하는 민간인이 있으면 징발 해제가 하달되기 전이라도 양도할 수 있는 용의를 가지고 있는 바 필요시에는 신청하는 경과에 따라 조속히 건물 철수와 아울러 사용할 수 있는 경작지로서 허락할 것”이라고 밝혔다.<sup>57)</sup>

그 뒤 1958년 국방부는 다끄내마을 지주들에게 토지를 반환했다. 1958년 11월 일부 토지는 다끄내마을 지주와 제주대 간의 토지이용권을 계약했다.

1959.

54) Ibid., OPERATION PLANS, CHEJU-DO AREA DEVELOPMENT AND TRAINING CENTER, April 20, 1959.

55) Ibid.

56) 「徵發農土를 不願返還 捕虜收容所 터 20萬坪 中 于先 4萬坪」, 『濟州新報』, 1957년 4월 29일 3면.

57) 「“事前에 連絡하라” 飛行場無斷出入에 警告」, 『濟州新報』, 1957년 8월 18일 3면.

제주대는 해당 토지를 농과대 농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11월 9일 국방부는 제주도 재향군인유족회와 별도 계약을 체결했고, 제주대는 재향군인 유족회와 토지 분쟁을 시작했다. 11월 14일 전체 토지 20만평 중 5천 평을 제주대가 유족회에 넘기는 조건으로 분쟁이 종결되었다.<sup>58)</sup> 제주공항은 1957년 2차 활주로 포장공사와 1962년 비행장 확장공사, 1979~1983년까지 다시 확장공사를 실시하면서 제8제주시수용소 일부 부지를 편입시켰다.

이번 연구에서 언급된 수용소 부지들은 한국군에서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발동해 유엔군에 제공한 것이며, 한미경제협정(마이어협정)<sup>59)</sup> 제3조 13항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되었다. 유엔군은 한미경제협정을 내세워 미군에서 징발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한국 정부는 유엔에서 징발한 토지를 보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까지 하고 나섰다.<sup>60)</sup>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sup>61)</sup> 심지어 미군은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고온 마을 140여 가구의 경작전답 21만평을 징발하면서 보상책을 마련하지도 않았는데 한국전쟁기부터 일부 토지를 그대로 징발하고 사용하고 있었다.<sup>62)</sup> 이에 주민들은 “이미 일부 토지만 징발될 사용되어 왔는데 최근 농사철을 앞두고 경작조차 못하게 한다”며 “금지구역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경작해야겠다.”고 반발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의정부 동두천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sup>63)</sup>

58) 『濟州新報』, 1958년 11월 6·17일.

59) 한미경제조정협정(Agreement on Economic Coordin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韓美經濟調整協定)은 1952년 5월 24일 재무부장관 백두진과 미국공사 C. E.마이어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이미 공여되고 있는 대한 경제원조와 관련해 각자의 역할과 양자 간의 관계 조정을 하고자 맺은 협정이다.

60) 「유엔軍 使用은 除外」, 『동아일보』, 1958년 11월 12일 1면; 「유엔군징발 토지·건물보상」, 『경향신문』, 1959년 1월 3일 1면.

61) 「垆地主들 데모 企圖」, 『동아일보』, 1963년 7월 5일 7면.

62) 「補償策없는 農土徵發 美軍서 21萬坪 華城郡 梅香里」, 『京鄉新聞』, 1963년 5월 6일 7면.

63) 각주 58과 동일함.

#### IV. 맺음말

한국전쟁기 포로수용소가 설치된 제주도과 통영 지역 용초와 봉암도는 섬이라는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토지 수용과 수용소 건설 장소, 국유지와 민유지, 주민 소개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전후 강제 징발된 토지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해제되었다. 하지만 제3모슬포수용소와 제8제주시수용소는 일제강점기 군사기지에서 한국전쟁기를 거치면서 국방부나 미군에 수용된 토지로 이어졌다. 전후 제3모슬포수용소 부지는 여전히 국방부 소유에서 해제되지 못했다. 다만 일부 토지가 민간에 대부되는 게 전부였다. 제8제주시 수용소는 상당부분이 제주국제공항 부지가 되었고 일부분은 민간에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통영 지역 두 섬의 토지 및 가옥은 군에 강제 징발된 뒤 주민의 요구에 따라 해제되었다. 주민들은 국방부로부터 일부 보상을 받았으나 복구 과정에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어야 했다.

본 연구에서 토지 수용 양상을 세 가지의 사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3모슬포수용소와 같은 국유지에 그대로 유지되는 사례다. 이 부지는 민유지→일본군에 매입을 거쳐 미군과 한국군에 이관되면서 한국전쟁기 포로수용소 부지→전후 미군과 한국군 기지로 사용되었다가 여전히 국방부 소유이다. 둘째는 민유지→국유지 또는 민유지 반환이 이뤄진 8제주포로수용소가 한 사례이다. 기존 일본군 비행장부지는 미군 제주도 기지에 수용되었다가 1952년 6월 수용소 부지 확장에 따라 민유지가 강제징발되었다. 전후 주민들의 요구로 국방부가 강제 징발한 토지를 지주들에게 반환했다. 하지만 두 차례 제주국제공항이 확장되어 상당부 토지가 재수용될 수밖에 없었다. 셋째는 민유지→강제수용→징발 해제 및 일부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다. 통영 용초도와 봉암도는 토지와 가옥의 강제 징발과 소개, 복구 과정에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공동체 피해까지 입어야 했다. 두 섬에서는 가옥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으나 공동체의 해체와 복구 뒤 복구 과정에서 벌어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주민들은 여전히 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향후 군사기지 반환과 활용 차원에서 더 깊이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국사편찬위원회, 『실록 대한민국사 자료집, 한국경제 정책자료 8: 번역·통계편』, 국사편찬위원회, 2013.

김동춘, 『전쟁과 사회: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돌베개, 2000.

김민환·강성현, 「한국전쟁 피해 상황에 대한 종합 통계자료 해제」, 국사편찬위원회, 『실록 대한민국사 자료집, 한국경제 정책자료 8: 번역·통계편』, 국사편찬위원회, 2013.

김민환·강성현, 「한국전쟁 피해 통계의 정치」, 2013 후기사학회대회 발표문.

김학재, 『판문점 체제의 기원』, 후마니타스, 2015.

대한민국국방부정훈국전사편찬회, 『韓國戰亂 一年誌』, 1951.

정영신, 「오키나와(沖繩)의 기지화, 군사화에 관한 연구 - 기지의 건설, 확장과 반환의 역사적 과정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73권, 2007.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1, Document 276, *Memorandum by the Executive Secretary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Lay) to the President*, Washington, September 24, 1952.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Part I, Adv. Echelon FEAF, letter to CINCAFPAC, "Release of Japanese Airfields", 21 Oct. 1945 (X X IV Corps G-3 files)&Radio FEAF Adv to CG X X IV Corps, 011937/I Nov. 45)

Ind. SUBJECT : Release of Real Estate at Cheju-Do Island, 17 september 1948.

PM 27-10, Rules of Land Warfare p. 81.

RG 338, Eighth U.S. Army, Military History Section, Entry A1 224, Box 1650, Enemy Prisoner of War Records, 1951-53, Final Report to Control Prisoners of War, HQ KCOMZ, The Handling of Prisoners of War during the Korean War, June 1960; Karl W. Gustafson, "The Korean Second Front: Prisoners of War"(US Army War College, Student thesis, 1963. 3)

RG 338, Eighth U.S. Army, Military History Section, Entry A1, 224, Box No. 1660, Enemy Prisoner of War Records, 1951-53, *Logistical Support to Prisoners of War, 8086th Army Unit*, July 1951-July 1953.

RG 469, Records of U.S. Foreign Assistance Agencies, 1942 - 1963, Unclassified Subject,

Files, ca. 1955 - 11/03/1961, Entry P 319, Box 4, Cheju-do Training Center, April 20, 1959.

RG 554, 383.6: [POWs Situation Reports; Procedure for Processing, Return and Reassignment of Exchanges in Korea; Recovered US Army Prisoners of War, etc.], United Nations Command, 1952. 6.

RG 554, General Correspondence Files, 04/1944-1948, Entry A-1 1378, Box 115, Lt. Gen. John R. Hodge Official File, 1944-48, AG File 602.

RG 554, General Correspondence Files, 4/1944 - 1948, Entry A-1 1378, Box 134, Bulk Declass E. O. Misc. Series, Area No. 8, SUBJECT : Notice of Intent Vacate, 31 July 1948.

RG 554,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1, Office of Provost Marshal, Statistical Reports Relating to Enemy Prisoners of War, 1950-53, Entry 222, Box 1, *Statistics, Prisoner of War Rosters and Statistical Reports*, 09/08/1952 - 09/24/1953.

佐世保鎮守府司令長官, 「第2373号 12.7.1 土地買入の件 朝鮮全羅南道濟州島大靜面」, 『公文備考 昭和12年 K 土地建築』 卷9, 昭和12年7月1日 (아시아역사자료센터 레퍼런스 C05111121000).

海軍省, 「濟州島航空基地」, 『鎮海警備府 引導目録』(아시아역사자료센터 레퍼런스 C08-010531800).

『秋元收容合書被害調書』

龍虎·秋峰里, 「被徵發 補償申請」, 1962년 8월 23일.

『서울신문』, 1948년 9월 14일.

『東亞日報』, 1954년 8월 6·16·17일; 1955년 11월 17일; 1958년 11월 12일; 1961년 4월 17일; 1963년 7월 5일; 1968년 10월 31일

『京鄉新聞』, 1954년 5월 11일; 1959년 1월 3일; 1959년 1월 15일; 1963년 5월 6일

『마산일보』, 1964년 2월 1·24일.

『매일경제』, 1966년 7월 22일.

『조선일보』, 1954. 1. 12.

『濟州新報』, 1957년 4월 29일; 1957년 5월 18일; 1957년 6월 30일; 1957년 8월 18일; 1958년 11월 6·17일; 1964년 11월 18일; 1969년 1월 25일.

Abstract

## Construction of POW Camps, Expropriation of Land, and Changes in Residents' Community : Focusing on Jeju-do and Tongyeong

Jeon, Gab-Seang\* · Kim, Min-Hw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es of residential communities such as the evacuation of residents, evacuees' camp life, their return to homes, and recovery through the expropriation of land and camp construction in Jeju-do and Tongyeong. First, this study will analyze how POW camps are established and constructed and examine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nd commonalities of wartime prisoners in Jeju and Tongyeong, which are both rear areas with drinking water and island. Jeju-do was already saturated with refugees and had Command Center of the 1st Army Training Center and several airfields, rather than logistics base to support large-scale foremost troops. In contrast, Yongcho and Pongam (presently Choobongdo) in Tongyeong were typical fishing villages without a military base although they were close from Jeju. Second, wartime prisoner and evacuees' camps were installed at the same time in the existing civilian residences with the changes of POW and refugee policy, inevitably causing land expropriation and changing the residents' community. After

---

\* Researcher, the Institute of Social Development and Political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King Jeongjo College of Liberal Arts, Hanshin University

April 1952, POW and refugee camps were built in many places according to the categorization of wartime prisoners but setting up additional camps brought the issue of having to forcefully evacuate the existing residents. Migration and separation of families caused during land expropriation could inevitably change the residents' community. Third, this paper will analyze what changes that expropriation of land and community brought during the evacuees' return, recover, and compensation. Residents who were forced to evacuate near the end of POW exchange after signing the armistice treaty returned to their hometown and recover the village. The residents demanded the release of land expropriated by the Ministry of Defense and to give them compensation. The issues of evacuees' recover, and compensation caused the various difficulties during the land expropriation of land to explode at once. Overall, this study aims to examine and analyze the changes of communities during the expropriation of land in the military facilities of two areas based on the land registers, land release data owned by the residents, and the talks of evacuated residents from the present perspective.

Key Words : war damage, POW camp, expropriation of land, evacuees' camps, resident damage

**제1저자 : 전갑생**

**교신 : 김민환** 18101, 경기도 오산시 한신대길 37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E-mail : ursaminor72@gmail.com)

논문투고일: 2018. 05. 10

심사완료일: 2018. 05. 30

게재확정일: 2018. 06. 07